

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

□ 주요 변경사항

- **(지원대상자 선정)** 선정평가 대상 및 가·감점 부여 시점 조정, 최종 우선순위 선정 시 적용하는 평가 산식 신설
 - **(선정평가 대상 조정)** 기존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자 전체 → 변경서면평가 결과(가·감점 반영)를 토대로 사업 계획 1.5배수 범위로 조정
 - **(가·감점 부여 시점)** 기존최종 선정 평가 이후 가점 부여,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반영 → 변경서면 평가 이후 가·감점 부여, 선정 평가 대상 범위에 반영
 - * 선정평가 대상(사업 계획 1.5배수)을 조정함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자가 선정평가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·감점 부여 시점 조정
 - **(평가 산식 신설)** 기존선정평가(가점 반영) 결과만으로 우선순위 반영 → 변경서면평가 결과도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종합평가 점수*(산식) 신설
 - * 최종종합평가점수 = (서면평가의 종합평가점수 × 0.3) + (선정평가점수 × 0.7)
- **(지원 대상 사업비 비목)** 기존인건비·직접비·위탁사업비·안전보건관리비 → 변경인건비·유형자산·건설비·운영비
 - ※ '23년도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(여비)의 경우 '24년도에는 사업비 불인정 (세부사항 관련 「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」 숙지 필요)
- **(보조금법 관련 규정 명시)** 정산보고서 검증·회계감사,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중요재산 규정, 제재부가금 기준, 강제징수 기준 등
- **(기타)** 가점 정비, 감점 신설* 등
 - 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수행의사를 철회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(5점)